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29 발의연월일: 2022. 5. 17.

발 의 자:유상범·권성동·권은희

김기현・김미애・金炳旭

김상훈 · 김석기 · 김승수

김영식 · 김예지 · 김학용

김형동 • 류성걸 • 박대수

서병수 · 서정숙 · 송언석

유경준 • 유의동 • 유두현

이용호 · 이태규 · 전주혜

정경희 · 정점식 · 정진석

정희용 • 조경태 • 조태용

최연숙 · 최형두 · 태영호

하영제 의원(34인)

제안이유

법령상 나이는 「민법」에 따라 '만 나이'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,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'세는 나이'를 사용하고 있고, 「병역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'연 나이'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.

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· 의료

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·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,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·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,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'만 나이'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 문서상 나이는 '만 나이'를 사용하도록 하고,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·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함(안 제7조의2제1항 신설).
- 나.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(年數)를 표시하되, 1 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함(안 제7조의 2제2항 신설).
- 다.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함(안 제7조의2제 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2절의 제목 "기간의 계산"을 "기간 및 나이의 계산"으로 한다.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①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(滿) 나이로 한다.

-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절 <u>기간의 계산</u>	제2절 <u>기간 및 나이의 계산</u>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
	산 및 표시) ① 행정에 관한
	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
	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
	외하고는 만(滿) 나이로 한다.
	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
	함하여 계산한 연수(年數)로
	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
	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
	시한다.
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
	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권
	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
	시하여야 한다.